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5월 13일,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5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수진의원)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 ☐ 「아동수당법」은 2018년 제정 당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2019년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되어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되었음.
- ☐ 그 이후로 지급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4조제1항)¹⁾.

< 아동수당 지급대상 제·개정 현황 >

2018년 제정	2019년 개정	현행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u>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 제적 수준을 고려하여</u> 지급한다. (후단 생략)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7세 미 만의 아동에게</u>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13세 미 만의 아동에게</u>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 현행 아동수당 지급절차는 보호자의 신청을 행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1) 다만, 부칙에 따라 연도별로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9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음

게 지급의 대상·금액·신청방법을 안내하면(법 제5조), 보호자등이 신청하고(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질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함(법 제7조).

「아동수당법」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u>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u>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 ③ (생략)
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u>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u>
② ~ ⑦ (생략)

□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다만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음(법 제10조).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u>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u>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u>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5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수는 2,212,298명이고 지급결정자수는 2,197,662명으로, 지급률은 99.34%임.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률은 매년 99%를 넘고 있는데, 이는 아동수당에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령 기준 내 대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급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임.

<아동수당 대상자 및 지급결정 현황>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지급결정자수	지급률
2021	2,398,394	2,377,531	99.13
2022	2,793,993	2,767,241	99.04
2023	2,465,046	2,443,393	99.12
2024	2,306,778	2,287,590	99.17
2025	2,212,298	2,197,662	99.34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주: 외국인 제외, 매년 12월 기준

-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현행 용어 중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변경
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조항을 신설하며,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출생한 날로 수정하는 등
의 내용으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급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 그럼에도 보호자의 제도 인지 여부와 신
청행위에 따라 수급권자인 아동의 권리 실현 여부가 달라질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제10조제1항에서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일부 자구의 정비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행법은 아동수당 지급에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아동수당
은 원칙적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
급하도록 규정하며, 나아가 방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법 제10조제1항 본문).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u>아동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u>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반면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당연지급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지급
시기도 원칙적으로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안 제10조제1항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u> (단서 생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u> (단서 생략).

- 그런데 개정안은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바, 지급을 결정한 날 이전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나아가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을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라고 약칭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u>보호자</u> (이하 “ <u>아동수당지급신청자</u> ”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아동수당지급신청자</u>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u>아동</u> (이하 “ <u>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u> ”라 한다)의 보호자 ----- ----- ----- ----- ----- ----- <u>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u> 및 ----- ----- ----- ----- (단서 생략)

- 약칭은 생략된 문구나 단어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 오인될 수 있는 약칭은 피해야 하는데²⁾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결정 후의 아동은 수급아동으로³⁾, 지급결정 전의 아동은 아동수당지급 미결정“자”로 지칭되는바, 지급결정 전의 아동을 “미결정아동”과 같이 약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32.

3)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